

명령서 번호 제 호 <h2 style="margin: 0;">자동차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 명령서</h2> <h2 style="margin: 0;"> <input type="checkbox"/> 운행정지</h2>						
소유자	성명(상호) (운전자성명)				생년월일	
	주 소				(전화번호:)	
사업장 소재지				(전화번호:)		
명령 사항	자동차번호				차종	
	사 유				개선기한 년 월 일까지	
	자동차운행 정지기간	년 월 일부터		년 월 일까지		
점검일시 및 장소		점검일시 년 월 일 시				
		점검장소				
점검 결과	배출가스종류	매연	일산화탄소	탄화수소	질소산화물	공기과잉률
	허용기준치	% 이하	% 이하	ppm 이하	ppm 이하	
	측정치	%	%	ppm	ppm	
	배출가스 관련장치 (촉매·조속기 봉인파손여부 등)					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0조제1항과 제7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, 제107조제1항에 따라 개선 또는 운행정지를 명령합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 년 월 일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 margin-top: 10px;">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orange; width: 100px; height: 80px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"> 직인 </div> </div>						

※ 알려드립니다.

1.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개선에 필요한 정비·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2.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정지기간 내에 운행할 경우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92조제1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
※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청 환경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